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안전관리 교류방안

박 필 수

우리 협회 상임고문

다음은 지난 3월 7일, 매일경제신문사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우리 협회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후원한 「사업장 안전관리부서의 역할제고를 위한 Work-Shop」에서 우리 협회 박필수 고문이 제2주 제로서 발표한 내용이다.

1. 의의
2.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총괄관리상 문제점
3. 협력회사에 대한 안전관리
4. 외부계열회사에 대한 원조·협력
5. 안전관리 지원방안

머릿말

노·사는 올해의 산업재해발생률 1% 미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처방전을 내놓고 그 치유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처방의 하나가 중소·영세기업의 높은 재해율을 어떠한 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목표 달성을 향해 가는 길을 밝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의 안전조치의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존속관계에 의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자가 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협력업체라 하더라도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에 의해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1. 의 의

1-1 협력사업장과 산업재해

건설업을 비롯하여 조선업, 화학공업 등의 산업에 있어서는 동일 작업장내에 다수의 협력사업장이 혼재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의존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또 자동차제조업이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있어서는 부품의 공급 등을 행하기 위해 계열화된 협력사업장이 외부에 다수 있으며 전체로서 하나의 기업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협력사업장은 대부분 중층성이 있고 더욱이 근로자수가 적은 중소·영세기업이 태반이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대기업(모기업)에 비교하여 높다.

1-2 협력형태와 안전상의 배려

오늘의 주제에서는 협력형태를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그 하나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에 협력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자의 외부에 계열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여러가지 면에서의 실질적인 컨트롤이 필요하므로 전자에 준하는 배려가 바람직하다.

1-3 총괄적인 안전관리의 추진

모기업과 협력사업장과의 사이에는 제품완성이라는 목적에서 설비, 기계 또는 작업 지휘면에서 유기적인 연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자는 운명공동체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모기업과 협력사업장은 흡사 하나의 기업체로 생각하고 모기업의 시책과 지도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2.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총괄관리상 문제점

근대적인 대기업의 운영은 협력업체의 존재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이렇듯 중요한 협력업체를 경영기반에서 보면 모기업으로부터의 계속적이고 안정된 항구계약이 없게 되면 기업체로서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결요건은 중소·영세기업의 건전한 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 모기업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기술·품질·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안전관리면에서 협력업체와의 공존·공영의 참된 협력체제를 뿌리내리는 데는 모기업과 무

엇이 어떻게 틀리는가라는 측면을 모색하면서 출발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나 실천도 접촉밀도가 높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가슴에 와닿는 것이 아니면 성공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업형태의 존속관계에서 끊임없이 신분적 차별의 피해자적 의식이 강하다.
- (2) 협력업체라는 것 때문에 기분적으로도 항상 저자세가 되고 있으며 열등의식이 있을 수 있다.
- (3) 작업자의 말단까지 작업 그 자체의 위험성·방호 등에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4) 교육의 기회도 많지 않으며, 매일 변화하는 작업환경에 대응하는 여유가 부족하다.
- (5) 모기업과 협력업체와의 안전에 대한 감각의 차이가 지도면에서 크게 나타난다.
- (6) 때로 안전관리상의 지시가 2중, 3중으로 될 우려도 있다.
- (7) 2차, 3차로 이어지는 관계로 조직적으로는 복잡하고 노무관리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 (8)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장악력과 실태의 투찰력이 어렵다.
- (9)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관리방법을 보면 추상적인 것이 많다.

3. 협력회사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기업에서 총괄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전체에 걸치는 안전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1 모기업의 안전관리체제

안전세미나

동일작업장내에 협력업체를 두는 기업에 있어서는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안법 제18조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모기업에 두도록 하고, 산안법 제29조에서는 모기업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력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모기업의 조치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안전에 관한 협력업체 사업주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을 매일 1회 이상 순회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행한다.

(3) 협력업체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장소, 강사 및 자료의 제공 등 지도와 지원을 한다.

(4) 화재발생·발파작업 등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주지시킨다.

(5) 기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3-2 모기업의 안전관리 · 발주 · 생산 등

각 부문의 상호간의 연계

모기업 자체의 업무조직이 비교적 세분화되고 있어 안전관리부문, 설계부문, 발주부문, 생산담당부문 등의 상호간의 연계 불충분으로 간혹 중대한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각 부문 상호간의 연계를 긴밀히 하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제시책이 통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생산방식, 새로운 기계·설비 등을 도입할 때에는 미리 관계 부문의 상호연계로 안

전측면의 충분한 검토를 기하고 협력업체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3-3 모기업에 의한 재해예방지도

협력사업장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지도가 필요하다. 즉 협력업체의 사업주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 규칙에 위반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도를 행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이들 법령의 위반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3-4 위험물 · 위험기기 등을 가지고 들어올 때의 점검

동일장소에서의 협력업체가 가지고 들어오는 기계·기구·재료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 현장에서 이들의 적·부와 사용방법 등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단계에서 체크하고 구조는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 안전장치는 적절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등을 확인한다.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이러한 점검, 확인체제를 확립해 두어야 한다.

3-5 재해예방 협의조직의 설치와 운영

모기업의 총괄안전관리체제의 정비와 함께 협력사업장에 있어서도 의사의 소통·협의·공통적인 안전제시책의 공동추진 등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조직을 둔다. 이 때문에 모기업의 적극적인 참가 및 지도하에 재해예방협의회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

(1) 안전교육의 실시

(2)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기능자의 양성

(3) 안전에 관한 규정 및 작업표준의 작성

(4) 안전에 관한 점검기준의 작성과 그 실시체제의 정비

- (5) 안전순시의 실시
- (6) 재해사례의 검토

4. 외부계열회사에 대한 원조·협력

4-1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실시

자동차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등에서는 모기업의 사업장 밖에 많은 계열사업장을 갖고, 계열사업장을 포함하여 하나의 기업체를 구성하고 있다.

모기업의 안전관리수준은 비교적 높지만 중소·영세기업 등이 많고, 프레스 등의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빈도도 높기 때문에 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체 전체로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수하더라도 그 구성부품이 높은 재해율 밑에서 공급되고 있는 결과가 되며 생산과 안전의 관점에서는 모순이 된다.

따라서 모기업으로서는 계열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발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이하의 계열사업장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업종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4-2 안전협의조직의 설치·운영

모기업과 계열사업장과의 사이에는 종래부터 협력회 등의 명칭으로 노무관리연구, 품질관리 연구, 친목 등의 활동은 있었으나 계열사업장 전체로서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4-3 지역성에 대한 배려

외부에 있는 계열사업 중에서는 모기업의 소재지 이외의 지역 등에 있는 것도 적지 않으므로 단일조직만 있게 되면 협의조직에의 불참 등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지회를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4-4 증증성 등에 대한 배려

협의조직에는 2차 이하의 계열사업장을 포함한 전사업장이 참가하는 것이 일체감을 조성하고 협의내용의 철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기업전체로서의 활동면에서는 추상적으로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업체의 규모도 고려하고, 모기업과 1차 계열사업장에 의한 협의조직, 1차와 2차의 계열사업장에 의한 협의조직의 설치 등을 검토한다.

특히 2차 계열을 대상으로 한 협의조직 구성은 중요하다.

4-5 협력조직의 협의사항

협의조직은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실시한다.

- (1) 재해방지 계획 등의 작성
- (2) 발·수주시의 모기업과 계열사업장의 안전상 배려할 사항의 검토
- (3) 안전관리체제의 정비
- (4) 안전교육의 실시와 자격자의 양성
- (5) 안전점검요령, 체크리스트 작성, 사업장간 상호안전 순시방법
- (6) 안전작업 수준의 작성
- (7) 안전용구 등의 검토 및 공동구입

4-6 모기업이 실시하여야 할 사항

모기업은 협의회 조직 및 계열사업장에 대한 지도·원조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배려한다.

- (1) 계열사업장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지도체제의 정비
 - (2) 발주의 적정화
- 발주는 생산능력 등을 고려한 적정한 납기,

안전세미나

안전경비를 포함한 적정단가가 되도록 배려하고 보호구, 안전장치의 사용기준, 위험물의 사용제한, 안전기준의 준수 등 명시

(3) 대여기계 등의 안전확보

(4) 안전진단의 실시, 안전교육의 지원

계열사업장에 대해서는 모기업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 작업공정, 작업방법의 개선에 대한지도

5. 안전관리 지원방안

무재해 부실공사방지 등 기업의 공적 책임이 오늘날과 같이 통감되고 사회의 이론이 높아짐에 따라 개별기업은 그 타개책 강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을 배경으로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존공영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함께 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이 지속적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5-2 선행요건

(1) 모기업의 지원에 앞서 협력업체 경영진의 “안전없이 기업없다”라는 「안전관리의 체질개선」 의식이 있어야 한다.

(2) 모기업의 지원대책이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이나 간섭이라는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3) 모기업과 협력업체라는 소외감을 버리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하의상달이 중시되고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조직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4)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지원방법을 탈피하고 각각의 협력업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파악, 일관성이 아닌 지속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

(5)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각기 안전관리를 추

진할 때, 지회계통이 2원화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역기능이 있어서는 안된다.

(6) 결과는 같으나 어떠한 특혜를 의식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의식은 바꾸어야 한다.

5-3 대응방안

(1) 위험요인의 공유화

공정(공종)별로, 위험요인별로 표준안전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업하여 협력업체에 배포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2)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평가

협력업체는 공사(생산)착공 전에 공법과 공기, 투입기능인력, 사용기자재, 안전추진상황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3) 합동안전진단, 안전점검팀 구성 운영

협력업체의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진단과 안전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자로 구성하는 합동팀을 구성·운영한다.

(4) 안전지원 대상은 대기업이 축적하고 있는 안전작업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항이어야 한다.

- 제조, 시공, 조업 등에 관련되는 기술기준
- 유해, 위험기계, 기구 등의 안전점검요령
- 사고 또는 재해의 원인조사, 분석, 사후조치 요령

◦ 안전교육 훈련계획의 추진 및 실시

◦ 작업환경, 작업공정, 설비시설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5) 감독자 중심의 안전책임제 실시

현장의 안전성적에 우열이 있다면 기능공들의 안전작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유능한 감독

자가 시공(생산) 라인에 얼마만큼 있느냐에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감독자 중심의 안전책임제를 지원한다.

(6)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 및 사용지도

- 건설업을 행하는 모기업은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협력업체에 공사의 위험도는 물론 당해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모기업은 지급된 표준안전관리비가 건설 현장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 목적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지도하고 수시로 집행감독을 하여야 한다.

(7) 협력업체 지원 협의회 등의 체계화

하나의 협력업체는 수개의 모기업과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모기업은 나름대로의 경영 이념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침에 따른 운영을 하게 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안전은 생산(시공)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생산관련 각 부문과 서로 유기적이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면 오히려 생산(시공)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도 예견된다.

따라서 협력업체 지원업무는 안전관리 부문만이 아니라 각 부문이 같이 이해되고 전사적으로 참여의식을 유도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작성하는 등 가급적 일관성 있는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8) 인재양성 지원

기업은 곧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거시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모기업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 훈련과정에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적극 참여시키는 등 인재양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9) 하도급 부조리 개선

맺는 말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현재 점화단계에 있으나, 모두의 경험과 중지를 모아 일과성이 아닌, 구호가 아닌,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대처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루 속히 협력업체에 타자의존이 아닌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안전은 도망가는 안전이 아니고 기계적, 형식적인 안전도 아니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기업방위”의 과제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재래식의 현상유지는 파멸될 것이며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으로 안전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준을 만들어내는 자력개발만이 오늘날 요구되는 안전의 자세이다.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빨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주어지는 반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기업들은 도태되어 갈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UR, WTO, Blue Round 등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재해율을 줄이고, 품질로 승부하는 건전한 경영전략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대기업의 과감한 지원투자가 기대된다.